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36
----------	-------

발의연월일 : 2025. 7. 8.

발의자 : 김기표 · 정성호 · 박선원

신영대 · 윤준병 · 민홍철

권칠승 · 이학영 · 김동아

한준호 · 강득구 · 위성곤

강준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복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기금을 활용해 대학생에게 기숙사 인프라를 제공하여 안정적 학업을 지원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기숙사 시설을 통해 우수 인재를 유치함으로써 사학기관의 지속적인 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제도임.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차상위 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음.

현행법은 행복기숙사가 공급받는 시설관리 운영권 및 기숙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이에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복기숙사가 학교 등으로 공급받는 시설관리 운영권 및 기숙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 일몰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